

임시사용승인서

허가(신고)번호

건축주

대지위치

지번

※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, 「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.

승인기간

승인내용		
동 명칭 및 번호	주용도	승인면적(㎡)

귀하께서 건축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(가설)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서를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